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3. 11. 17.
기획행정위원회

### 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박정환 의원 등 9명(고명옥, 정순옥, 권숙자, 이진환, 김장관, 김정희, 이영빈, 서민우)
- 발의일자: 2023. 11. 3.(금)
- 회부일자: 2023. 11. 3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11. 17.)

### 2. 개정이유

-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구청장 발의 조례안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·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,
- 비용추계제도는 국회 및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와 일부분의 기초단체에서 구청장과 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·제출하는 조례안에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
- 작성 대상을 확대 추진하여 재정 부담 요인의 사전 점검 및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, 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·제출하는 조례의 실효성을 강구하고자 함.

### **3. 주요내용**

-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확대 (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)
-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발의권과 비용추계 제출 사항 정비(안 제3조제4항 및 제6조제2항)
-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(안 제6조)

### **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**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 - 「지방자치법」,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
 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3. 11. 3. ~ 11. 13.)결과: 의견 없음

### **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**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8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 · 제출하는 조례 안에 대해서도 작성하도록 하여 의안 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 ·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도 재원 조달방안 작성 근거를 마련하여, 비용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또는 의원 발의 · 제출 조례의 실효성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**6. 질의 · 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**

### **7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